보건복지부	보도자료	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	2023. 5. 2.(화) 국무회의 시작(10:00)이후	배포	2023. 5. 1.(월)

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3천만 원 → 5천만 원 상향 등 의료안전망 강화

-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-

정부가 국민의 **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**를 위하여 **국정과제**로 추진 중인 **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**의 **연간 한도**를 **5천만 원으로 확대**하며 **의료안전망**을 **한층 강화**한다.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**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**이 **국무회의에서 의결**되어, **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**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이번 개정은 **2023년 3월 28일 개정·공포된 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」**에 따라,

외래의 경우에도 **질환에 관계없이**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희귀질환 진단·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 범위에 포함하는 등 **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다.**

아울러,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를 현행 연간 최대 3천만 원*에서 **5천만 원으로 확대하였다.**

* 개별심사를 통해 1천만 원까지 추가 가능

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지원 한도 확대 (제11조제3항제2호)

- 치료에 필수적이면서 1회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* 등 **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 현실을 반영**하여 **재난적의료비** 지원 **한도를 상향**한다.

* (예시) 뉴로나타(루게릭병 치료제, 1회 15백만 원), 트로델비(유방암 치료제, 1회 85백만 원) 등

- 기존 **연간 한도**는 **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***을 **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.5배** 이내로 **최대 3천만 원****이었으나, **3배 이내로 상향**하고 고시 개정을 병행하여 **5천만 원**으로 **규정**한다.

* '23년 기준 207만 7,892원

** 「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로 규정

② 외래진료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 (제3조제2항제2호 개정, 제8조 삭제)

- **외래진료 시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**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**관련 규정**을 **정비**하였다.

- 기존에는 질환 제한이 없는 입원진료 지원과 달리,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중증질환으로 한정하여 주사제 투여, 영상의학적 검사 등 **외래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** 지원에 **사각지대 발생** 우려가 있었다.

- 이번 개정을 통해 **외래진료 시에도 원칙적으로 질환과 관계없이 재난적의료비 신청** 대상이 되어 **제도 접근성 확대** 및 **적기에 필요한 지원**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③ 희귀질환 진단·치료 목적의 의료기기 구입비용 재난적의료비로 포함 (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)

- 희귀질환 진단·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의 범위로 포함한 **모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**하였다.

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"이번 시행령 개정은 **과도한 의료비**로 인한 **가구 부담을 충분히 완화**하려는 취지"이며, "**국민 누구나 보편적**

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"라고 밝혔다.

<별첨>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담당 부서	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	책임자	과 장	임혜성 (044-202-2670)
		담당자	서기관	박지민 (044-202-266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